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향후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어학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0.5점에서 0.3점으로, 자격증·학위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1점에서 0.6점으로 단축하고, 종국적으로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별표3, 별표4).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9. 22. ~ 10. 31.) 예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자격증을”을 “자격증과 학위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0.5점”을 “0.3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점”을 “0.6점”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5조, 별표3, 별표4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가점 평정) ① ~ ③ 삭제	제15조(가점 평정)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④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u>자격증</u> 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2. ----- ----- ----- ----- . ----- ----- <u>자격증과 학위를 각각</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
1. 삭제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u>0.5점</u>	2. ----- <u>0.3점</u>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u>1점</u>	3. ----- <u>0.6점</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언어능력 가산점 (제15조제5항제1호 관련)

구 분	국어능력 (0.3)			외국어능력 (0.3)		
	1급	2급	3급	토익 870점 이상	토익 790점 이상	토익 730점 이상
평정점	0.3	0.2	0.1	0.3	0.2	0.1

※ 비고

1. 국어능력 가산점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0.3점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 평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에 텡스, 토플 등 영어시험과 그 밖의 외국어능력의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자격증 및 학위 가산점(제15조제4항제2호 관련)

구분		평정점
자격증 (0.3)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통신·전자·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및 기능장, 청소년 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화약류 관리기술사	0.3
	경비지도사, 통신·전자·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 지도사 1급, 화약류 관리기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1급	0.2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통신·전자·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조선·화공·위험물·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화약류 관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점역교정사 2급 및 3급	0.1
학위 (0.3)	박사	0.3
	석사	0.2
	학사	0.1

※ 비고

1. 자격증 가산점과 학위 가산점을 합산하여 0.6점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채용 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이 면제되거나 응시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있다.